

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어르신 · 장애인복지과)

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4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5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: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	개관일
정릉실버복지센터	솔샘로 8 (정릉동)	813㎡	지1층~3층	2010.2.1.
삼선실버복지센터	삼선교로18길 41 (삼선동)	542㎡	1~4층	2019.6.21.
성북50+센터	지봉로24길 26 (보문동)	1,072㎡	3,4층	2019.2.12.

※ 정릉실버복지센터 :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 포함

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
다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
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라. 위탁사무의 범위 : 센터 관리·운영 및 사무 전반

시설명	위탁사무
정릉실버 복지센터	-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(상담, 사회교육, 기능회복사업 등) 지원 - 지역사회활동(지역기관 참여, 지역복지사업 등) 발굴 및 연계
삼선실버 복지센터	- 외부사업 공모·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- 시설물 관리 사항(건물, 물품 장비 등)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성북 50+센터	- 중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교육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- 기타 중장년층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※ 정릉실버복지센터 :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사무 포함

마. 신청자격

-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3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어르신복지시설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

4. 향후계획

- 수탁기관 모집 : 2025. 7. ~ 8.
-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5. 9.
- 협약체결 : 2025. 10.

5. 관계법령 등

가.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감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다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- 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- 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- 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- 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